

기지시설물 및 조경관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용역업무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사전 배치하여 용역업무 인수인계 및 계약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 (종업원의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중인 인원 전체(관리소장 포함)의 고용을 변동없이 승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임의 파견, 교체시킬 수 없다.(자진사퇴 제외)

제3조 (종업원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 종업원의 건강, 신원, 풍기 및 작업 규율의 유지, 안전사고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관리소장의 임무)

관리소장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특이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부서와 관리담당자의 요청사항을 계약상대자에 전달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업무연락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결원 보충)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충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직원의 복장)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업체 이름이 명기된 표시를 왼쪽가슴에 부착토록하며, 동복, 춘추복, 하복, 작업복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해당 시설물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적정임금의 보장)

-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계약담당직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정가격 산출내역을 기초로 한 직접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금액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이하로 임의 감액 조치할 수 없다.
- ②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종업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내역서상 임금에 대한 지급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증거서류 열람 또는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였을 경우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월 지급하는 용역비에서 미지급 임금만큼 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결원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급)

직원 결원(결근포함)이 있을 때에는 월 용역비 지급시 결원(결근포함)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감하고 지급한다.

제10조 (계약기간 연장)

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는 상호협의를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